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잠원2 빗물펌프장 신설공사]

- 점검일시 : 2017.08.30 (수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기성호,홍민철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 또는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하여야 하는바, 사다리를 이용한 바닥 슬라브로의 수직이동 시 추락방지를 위한 수직생명줄(추락방지대, 일명 코브라)을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체결토록 관리감독 조치요함
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04(사다리 일자형)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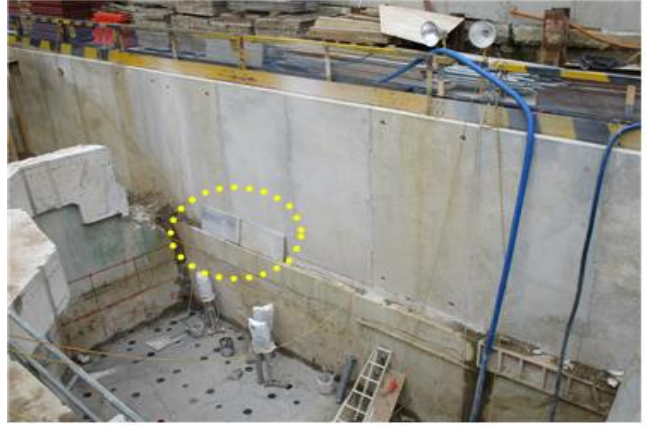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단부와 인접하는 부위는 작업 종료 후에도 추락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시설 또는 난간설치 요함
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01(안전난간)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조치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바닥 슬래브 작업장 상부에 대리석 판넬이 있어 낙하할 경우 하부의 작업자가 재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이동조치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감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현장에 설치된 투광등에 전등 보호망이 설치되지 않았으니 보수하여 사용하기 바람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25 투광기



○ 기타 안전관리(방재시설부)

- 가설휨스 하부에 쌓아 높은 모래마대가 훼손되어 있으니 정비하기 바람



○ 기타 안전관리(방재시설부)

- 침사지에는 호우시 오탁수가 그대로 하수관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거름망을 설치하기 바람

